

# 자치경찰제 활성화 및 인적자원 확충 방안

- 외국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 I. 서론
- II. 정부의 자치경찰법(안)
- III. 제주자치경찰 운영사례
- IV. 외국의 자치경찰 사례
- V. 외국의 자치경찰 지원인력 사례
- VI. 개선 방안



# 자치경찰제 활성화 및 인적자원 확충 방안

- 외국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 I 서론

-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틀은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 기구의 창설을 근간으로 함
- 자치경찰의 조직규모는 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자치경찰의 신분은 특정 직 지방공무원으로서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지방행정조직의 과 수준에서 고려하였음
- 수행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와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생활 보호, 보건위생 등 특별사법경찰사무의 수행이 중심이고,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재정부담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으로 국가가 일정기간,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음
- 자치경찰기구를 처음 출범시킬 때 자치경찰 인력의 50%는 국가경찰에서 이관하고 나머지는 신규채용 하는 것을 인력구성 지원 방안으로 하였음
- 정부는 2005년에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시범지역을 공모하기 위하여(2005년 4월), 시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2005년 5월), 공모지역에 대한 현지실사(2005년 6월~2005년 9월)를 거쳐 선정기준(①시·도별 1개 신청 자치단체, ②특별유형, ③시·도별 평가점수에 따른 1순위)에 따라 <표 1>과 같이 시범실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둔 바 있음

〈표 1〉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선정 자치단체 (17개)

구 분	자 치 단 체 명	비 고
1개 신청 자치단체(6개)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강원 정선군, 전남 강진군	시도별 기준
특별유형(3개)	경남 남해군(해안), 경기 과천시(관광·레저), 충남 서산시(산업)	지역별 특성 반영
일반유형(8개)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부산 서구, 인천 부평구, 경기 포천시, 충북 충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의성군	조직형태 및 인구규모에 따라 구분

- 먼저 정부가 입법제안한 자치경찰법(안)의 내용과 주요 구성요소(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 조직 및 인력구성 요소, 인사관리와 교육체제)를 검토하고 제주자치경찰 사례도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본 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자치경찰제와 벨기에, 영국의 지방경찰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의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살펴보기로 함

## II 정부의 자치경찰법(안)

### ■ 자치경찰의 수행사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은 보충성원칙에 따라서 국가경찰은 범죄대응, 법질서 확립, 사회안정 확보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자치행정의 법집행지원, 기타 특별사법경찰사무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의 자치경찰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의 기본사무(동 법안 6조)는 4개 분야 즉, 주민의 생활안전활동, 지역교통활동, 시·군·구의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17종) 등으로 구분하였음(자치경찰법(안) 제6조)
  -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운영, 주민협력 방범 활동, 안전사고 예방, 아동·노인·여성학대 및 가정·학교폭력 예방 등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의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사무
  -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교통안전 및 소통,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주민협력 지역교통활동
  -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 시·군·구의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

- 자치경찰의 특별사법 경찰사무 : 보건·위생, 교통, 환경, 문화·경제 등 특별사법경찰 사무 17여종

## ■ 자치경찰의 기구편성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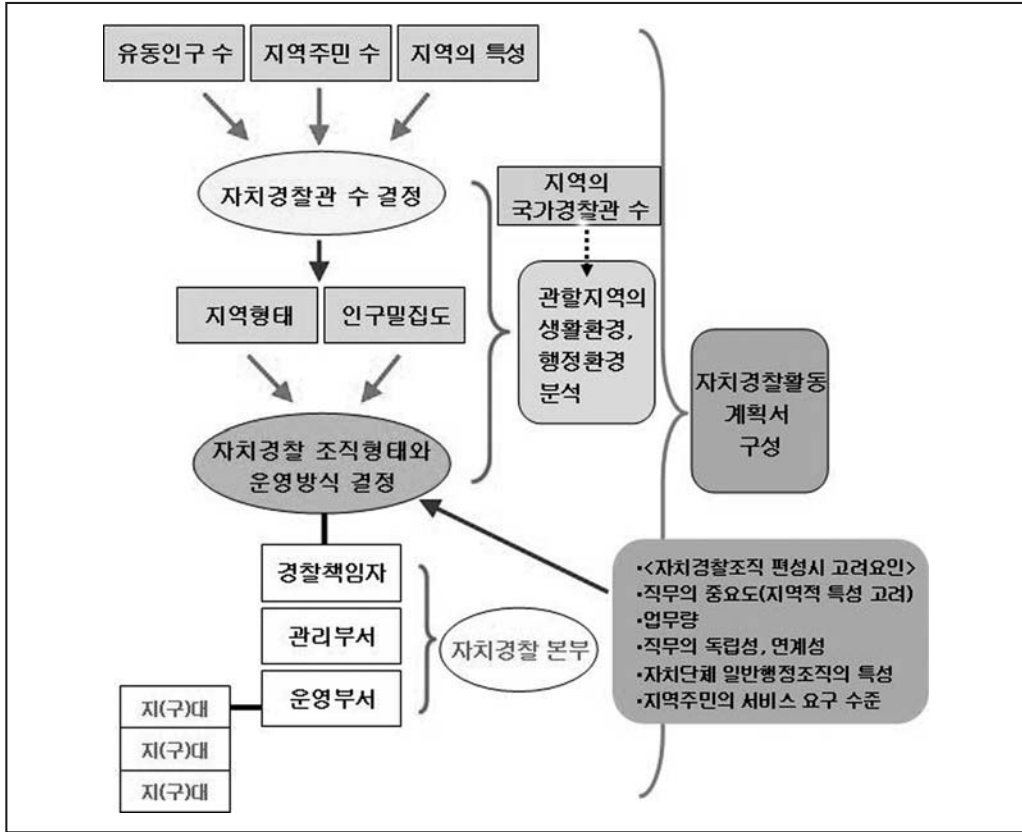
### ● 자치경찰총인력 산출방법

- 자치경찰 실시 초기단계의 정원 산정 및 기구의 규모는 「2005년 자치경찰 인력산정을 위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표준정원제 모형을 적용하여 자치경찰 전체 인력산출의 산정 근거로 활용하였음
- 2005년 조사 당시 국가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경찰인력을 대비하여 공동사무 중 자치경찰업무로 처리하는 사무비중에 맞는 초기 시행단계의 자치경찰 적정인력을 산출하였음
- 그 산출방식은 인구수, 면적, 결산총액, 읍면동수가 기본정수 산출지표가 되며, 표준화 지수를 18개 선정하여 공무원 표준정원을 위한 모형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음(초기 단계에 자치경찰 최소 필요 인력은 약 9,000명~15,000여명으로 추산)
- 자치경찰 조직편성시 최소인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직무의 중요도, 업무량, 기관의 특성, 직무의 독립성과 연계성,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요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 자치경찰활동량 산출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될 자치경찰 수행사무와 관련된 인력구성을 예상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사무 수행인력으로 자치경찰공무원, 단속담당 공무원, 청원경찰, 공익요원, 각급 시민봉사단체(방범순찰대,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대 등)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였음
- 자치경찰 활동에 관한 관련직무를 분석하기 위해서 국가경찰서의 팀제, 산하 지구대, 치안센터, 파출소 등 여러 기관의 치안 활동 형태를 분석하여 자치경찰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 조직규모를 도출하였음

〈그림 1〉 자치경찰의 인력·조직편성시 고려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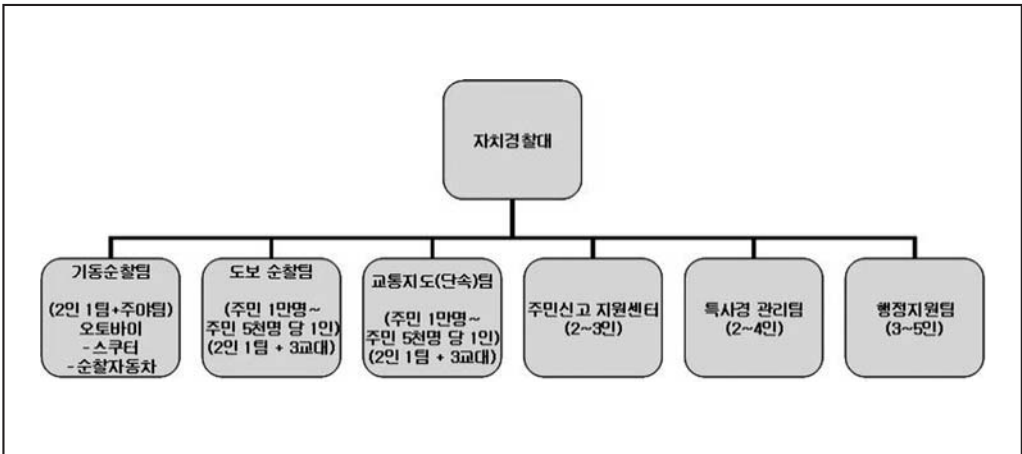


● 자치경찰 기본조직의 편성방안

- 자치경찰 기본조직(자치경찰대)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기능간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확정하고 전체 치안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음
- 조정기획기능, 지원기능, 사업집행기능은 행정처리상 행정관리 및 운영지원 조직으로 2차 기구를 편성하도록 하고, 국가경찰 지원기능과 대민적 집행기능은 실무팀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 이 경우 자치경찰 관할구역의 획정은 관할구역을 인구, 면적, 주민생활권, 교통망, 치안 수요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경찰 순찰대(반), 자치경찰 포스트(파출소 유형) 등을 편성하도록 고려하였음
- 결과적으로 자치경찰대의 최소인력 판단기준은 지역을 읍면수로 나누어 생활안전 등 외근인력을 배정한 후 나머지 내근인력을 분야별 소요인력으로 판단하여 이를 전체 합산함

-따라서 외근인력은 생활안전, 교통사무, 방범 및 치안, 특사경, 주차단속 등 수행사무별로 구성하여 기본 15~16명(2~3명 1조 또는 1팀) 정도가 되고, 내근인력은 행정전담인력, 외근인력 지원부서 정도의 인력으로 대장 1명, 서무인력 2명, 특사경 및 경비계획분야 2명 등 5명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음(〈그림 2〉 참조)

〈그림 2〉 자치경찰의 조직편성 기본구성도



### ■ 자치경찰의 계급별 정원책정 기초

- 자치경찰기구의 계급을 책정함에 있어서 자치경찰대를 하나의 실국단위 기구와 동일한 차원에서 고려해 볼 때 자치경찰대장은 기본적으로 4급, 과 단위에서는 5급의 위상과 동일하게 경찰계급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자치경찰대장의 경우 지역 내 국가경찰, 소방, 보건 등 유관기관장 계급의 위상에 상응하는 계급을 부여하여 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기 때문임
- 그 결과 자치경찰의 계급별 정원책정은 다음 표와 같은 새로운 계급체제로 다양화가 가능함

〈표 2〉 자치경찰의 계급별 책정기준(평균)

구분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정원(100%)	3%	5%	10%	20%	32%	30%

〈표 3〉 자치경찰의 계급별 정원 비율(평균)

구분 (자치경찰대장)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총 경	4% 이내	7% 이내	13% 이내	20% 이내	32% 이내	24% 이상
경 정		7% 이내	13% 이내	21% 이내	33% 이내	26% 이상
경 감			14% 이내	22% 이내	35% 이내	29% 이상

### III. 제주자치경찰 운영사례

#### ■ 제주자치경찰의 주요 수행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9조에서 자치경찰단의 사무를 규정함(다만, 제12호 내지 제15호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로 한 사무에 한함)
- 방법순찰, 안전사고 예방활동,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학교 폭력 예방,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 생활안전활동,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 지원,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등 지역교통활동,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고, 자치경찰단에 경무팀·생활안전팀 및 관광환경팀을 두고, 경무팀장·생활안전팀장 및 관광환경팀장은 자치경정으로 보함



## ■ 제주자치경찰의 조직과 인력구성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하며, 제주·서귀포 행정市에는 집행기구 성격의 「자치경찰대」를 설치함
- 단(대)에는 경무·생활안전·관광환경팀을 구성함

〈그림 3〉 제주자치경찰 조직



〈표 4〉 제주자치경찰 편성인력

(2007. 12월 현재)

구 분	총 계	자치경찰단	제주경찰대	서귀포경찰대
정원	127명	18명	69명	40명
현원	83명	18명	40명	25명
과부족	- 44명		- 29명	- 15명

〈표 5〉 제주자치경찰 세부인력 현황

(2007. 12월 현재)

구 분	합 계	자치총경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자치경장	자치순경
합 계	127	1	5	9	14	15	16	67
자치경찰단	18	1	3	1	6	7	-	-
자치경찰대	소 계	109		2	8	8	16	67
	제주시	69		1	5	5	11	42
	서귀포시	40		1	3	3	5	25

## ■ 제주자치경찰의 인사관리와 교육훈련 기초

-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채용에 관해서는 아직 정부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대신 제주자치경찰에서 시행한 기본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제주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2006년)과 신규채용(자치순경, 45명)으로 시행되었으며, 응모자격은 우수자원의 지원을 유도하고, 인력이관의 취지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연고의 제한없이 전국단위로 모집하였음
- 선발기준은 국가경찰의 기능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교통·전산·통신 등 전문분야를 우선 고려하여 국가경찰공무원 중 일부(12명)를 차상위 계급으로 승진 임용한 바 있고,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제주지역으로 거주지를 제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한 후 필기시험, 신체·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쳤음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남자의 경우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한정하였고, 신규 임용자는 경찰청 위탁교육을 실시(중앙경찰학교, 12주)하였고, 특별히 자치경찰업무와 관련해서 제주지방공무원인력개발원에서 2개월(8주) 추가교육을 받았음
- 교육과목은 소양과목(경찰정신 등 5과목 21요목 123시간), 법률과목(경찰작용법 등 4과목 20시간), 실무과목(경무 등 12과목 37요목 369시간), 기타(48시간) 등으로 시행되었음

## ■ 제주자치경찰제 운영상의 문제점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제주자치경찰이 설치·운영되었으나, 처음 운영되는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이는 향후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해서 해결이 필요한 부분임
- 제주자치경찰은 총 정원 127명 중 제주시 40명, 서귀포시 20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18명 등 현재 83명이 근무하고 있음

-이중 국가이체인력 38명에 대해서만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20억원)를 지원받아 국비 지원 32%, 지방비 사용 68%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장 계도활동이 많은 업무성격상 자치경찰의 인력부족 문제를 국비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역사회와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 자치경찰제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보조인력과 자원봉사 활용제도를 보강 할 필요가 있음

## ■ 현재까지의 운영성과

- 제주자치경찰의 운영결과를 간략히 보면, 먼저 수행업무는 주로 제주국제공항 관광질서 확립 및 교통관리(총 8,026건 수행 처리), 한라산·관광지 등 관광객 보호 및 위반사범 단속(총 347건 수행 중 교통단속 258건, 경범죄위반 89건 단속), 관광·환경·산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업무에 대한 지도·단속(총 175건 중 146건 처리), 축제·문화행사 혼잡경비 및 교통관리(총 동원인원 3,119명, 255회 시행), 교통안전시설 개선(횡단보도, 신호기 등 신설처리 등 120건 개선) 등에 주력하여 왔음
- 그 결과 제주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인식변화를 가져왔으며, 지난 수십년간 제주공항에서 고질적으로 행해지던 호객행위 근절 및 교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등으로 관광질서 확립에 기여하였고, 한라산 등 주요 관광지에서 자연훼손, 질서문란 사범 등에 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 이미지 조성에 기여하고, 각종 축제·체육행사 등의 혼잡경비를 담당하여 질서유지 활동을 통한 안전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초기단계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자치경찰제 운영예산에 대하여 국비 32%, 지방비 68% 비율로 지출되고 있으며, 인력 또한 총정원에 44명이 부족하여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등에 규정된 일부 사무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음
- 결과적으로 정규인력이 상당수 부족하여 주민들 가까이서 직접적인 자치경찰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앞에서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및 실제 운영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원부족 및 인적자원 확충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자치경찰제를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IV. 외국의 자치경찰 사례

### ■ 자치경찰의 수행사무

- 자치경찰이란 주민의 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 또는 지방정부의 장 책임 하에 자율적인 자치경찰 조직·인사·재정 수단을 갖고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을 위한 공공(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임
  - 따라서 자치경찰제는 유럽과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근거해서 '지방자치정부'가 자치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 자치경찰기구는 유럽 국가와 미국 모두 예외 없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의회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자체예산과 자체인력으로 구성·운영됨
-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국가의 자치경찰 기능은 오래 전부터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치안유지를 해왔음
- 유럽국가의 자치경찰사무는 그 수행내용상 사회질서와 안전, 시민보호, 공중위생 등을 확실히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수단으로써 시장의 총괄적인 행정경찰권(general administrative police authority) 하에서 도로교통, 관광보호, 환경 및 산림보호, 위생보호 등이 특별경찰행정권으로 수행되고 있음
- 주차위반,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벌 부과를 할 수 있는 자치경찰의 주요 공통 권한은 ① 위험·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주차위반, ② 교통신호 위반(정지신호위반, 방향지시등 위반 등), ③ 제한속도위반, ④ 눈, 비, 안개 시 규정신호표시 위반차량, ⑤ 차선위반, 추월금지 위반 등에 대한 자치경찰권 발동 등임

- 벨기에의 자치경찰제 운영은 프랑스와 같은 자치경찰이 있었으나, 2000년 이후 국가군경찰(brigades territoriales de la Police Federale)과 기초자치경찰(corps de police communale)이 지방경찰(Police Locale)로 통합되고, 검찰소속 사법경찰과(지방의 국가군경찰을 제외한) 국가군경찰이 연방경찰(Police Federale)로 재편되면서 2007년 현재 연방경찰과 지방경찰(자치경찰 포함)로 이분되어 있음
  - 이는 지방경찰 중에서 자치단체와 관할지역이 동일한 경우에 시장의 자치경찰권 하에서 수사권을 포함한 자치경찰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체제로 프랑스, 스페인의 자치경찰제보다 한 단계 발전된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벨기에 지방경찰은 특별사법경찰업무 이외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범인체포 등 미국의 도시경찰과 동일한 수준에서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표 6〉 각국의 자치경찰사무

구분	자치경찰	근거법	자치경찰기능	기타
프랑스	자치경찰	-1998년 자치경찰법	-자치경찰 사무(지방자치법, 제 L, 2212-2조) : 통학로 안전 확보, 주차위반 단속, 순찰, 경계활동, 범죄 인지의 경우 국가경찰에 통보 활동, 거동수상자에 직무질문, 임의동행, 신체수색, 자치단체 축제 감사관리, 자치단체 시설 및 건물 경비, 도로법 규칙상 나열된 도로법 위반에 대한 조사작성권 및 보고	자치경찰은 시장이 임명하나 도시사 및 지검장의 동의 필요
이탈리아	자치경찰	-1986년 자치경찰 기본법에서 자치경찰의 권한을 규정 -자치경찰은 1986년 3월 7일 기본법 제65호에서 규정 -1987년 3월 4일 자치경찰의 무장에 관한 내무부령으로 보완 -동법 제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경찰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자치경찰 조직"	-행정경찰권 외에도 교통경찰, 공공안전과 사법경찰의 기능을 수행 -기능 : 행정경찰기능 이외에도 교통경찰, 공공안전, 사법경찰의 사무를 수행 -교통경찰기능(traffic police) : 교통사고 예방, 교통범죄 예방, 교통사고 보고 및 교통규범 제정 -공공안전(public security) : '공공안전'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의 기능이며, 자치경찰은 이의 보조기능 수행 -사법경찰기능(judicial police) : 사법부의 책임 하에 범죄소탕, 범인수색, 범죄상황보고 등의 사법경찰 기능 수행	-1986년법 제5조에서, 자치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가짐 -자치경찰 책임자는 사법경찰장교의 지위를 가짐 -자치경찰장교는 때로 공공안전경찰관으로서의 자격을 가짐 (이 경우 도시사가 공공안전경찰관으로 임명하고, 무기를 소지하게 할 수 있음)

<p>스페인</p>	<p>지역경찰제 자치경찰</p>	<p>-1986년 3월 13일 경찰력 조직법 제2호에서 경찰종류를 구분 -스페인 헌법 제149조1-29국 가사무 중에서 제29항에 자치 지역의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직법 규정에 근거하여 경찰을 창설 -카탈로니아와 바스크 지방에는 지역경찰이 존재 -안다루치아 지방의 경우는 국가경찰이 지역경찰활동을 대신  -1986년 4월 18일 시행령 제4 조에서 주민 5천 이상의 자치 정부에 자치경찰을 조직 -1986년 4월 18일 국회시행령 (지방자치 관련법)에서 주민 5천명 이상의 자치단체는 자치경찰을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 -자치경찰조직이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공무원이 자치경찰기능을 수행</p>	<p>-1986년 조직법 제5권 중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시설과 건물 의 보호 -관할지역 내의 교통통제 및 신호체계 관리, 교통사고의 처리 및 보고 (국가경찰에 보고) -자치단체 관할 내의 행정경찰사무 수행 및 자치단체 조례 및 시장명 집행 -동법 제29-2조에 의거한 사법경찰 활동에의 참여 -천재지변 및 재난활동과 민방위 활동에 관여, 안전사고 등의 예방조치(국가경찰에 보고) -집회 및 시위의 경우 공공장소의 감시와 국가경찰 및 지역경찰 활동에 협력 -접수된 사건의 경우 사인간의 갈등 해결에 협력 등</p>	<p>무기소지</p>
<p>벨기에</p>	<p>지방경찰 자치경찰 (혼합)</p>	<p>-1986년 2월 11일 기초자치단체법과 1992년 7월 16일 경찰 기능법에 의해서 자치경찰이 조직 -2000년부터 지방경찰제로 전환</p>	<p>-1986년 기초자치단체법 제156조 :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경찰을 조직 -자치경찰의 임무: 행정경찰, 예방경찰, 사법경찰, 진압(퇴치)경찰의 기능 -1992년 8월 5일 경찰기능법 (fonction de police)에 규정 -행정경찰권, 사법경찰권, 공공질서의 유지, 교통통제 등</p>	<p>-1995년 4월 24일 왕령으로 자치경찰은 푸른바다색의 자치경찰복장 착용. -자치경찰합력구역(zone interpolice) 설정 -경찰봉, 반자동소총, 최류 가스분무기</p>

## ■ 자치경찰의 기구설치 및 운영

### ① 프랑스

-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자치경찰기구의 설치기준은 주로 인구 2만 명 이상 자치재정 상태가 양호한 지방정부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치경찰 조직은 기초정부의 자율권에 의하여 시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창설할 수 있고, 자치경찰기구 설립이 결정되면 자치경찰을 채용할 때에는 자치경찰 임용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은 기초정부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통행정기관의 장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치안유지라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자치사무도 수행하는 이중적 지위에서 중복사무를 수행함

## ② 스페인

- 스페인의 기초자치경찰 설치는 헌법근거 규정과 지방자치기본법 및 각 자치지역의 법률과 시의 조례규약 등에 근거하여, 1986년 4월 18일 국회시행령(지방자치 관련법)에서 주민 5천명 이상의 기초자치정부는 자치경찰(Policia Municipal)을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③ 이탈리아

- 이탈리아 자치경찰의 설치는 1986년 3월 7일 제정된 기초자치경찰법(법률 제65호)에서 자치경찰 조직을 규정하였고, 7명 이상의 자치경찰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단(Corpo di polizia municipale)을 설치할 수 있음
- 이때 지역의 주민 수, 유동인구 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관의 수, 경제성, 거주인구 및 유동 인구 밀집도, 관할지역의 지리적 형태, 도심지역의 구획 형태를 고려한 경찰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 자치경찰의 인사관리체계

### ① 프랑스

- 프랑스 자치경찰 조직은 경위(brigadier-chef), 경사(brigadier), 순경(gardien principal), 순경보(Gardiens) 등 인력이 최소 2명 이상이 되어야만 자치단체의 자치경찰로서 그 기능 수행이 가능함
- 인사관리에 있어서 자치경찰부서장 직급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되면, 자격시험을 거쳐 자치경찰장의 직급으로 승진이 가능하고, A·B·C직급별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근무경력 이외에도 반드시 자격시험에 합격되어야 함

〈표 7〉 프랑스 자치경찰 계급별 인력비율

(2004년 기준)

자치경찰 계급	인력비율 (%)
자치경찰서장(chef de service)	2
자치경찰간부(chef de police)	6
자치경찰부서장(brigadier-chef principal, 경장)	19
경위( brigadier-chef)	22
경사(brigadier)	3
순경(gardien principal)	31
순경보(Gardiens)	17

### ② 스페인

- 스페인 기초자치경찰의 인사관리체계는 총 인력 5만명으로 1,700여개 단위조직으로 구성되어 전체 인구의 90%에게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06년 현재)
-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 10만 명 이상의 시정부는 모두 자치경찰 조직을 구성하여 평균 400명의 자치경찰 인력을 고용하고 있음
- 법적 최소기준인 주민 5천명의 기초정부인 경우에는 평균 9명 정도의 자치경찰 인력이 활동하고 있음



- 수도 마드리드시 자치경찰은 2007년 현재 약 7,000명 이상의 자치경찰이 있음

〈표 8〉 스페인 기초자치정부 주민 수에 따른 자치경찰 평균 인력수

주민 수	자치경찰 조직	평균 활동 인력
5천명~1만명	92%	9
1만명~2만명	97%	19
2만명~10만명	98.5%	54
10만명 이상	100%	425

- 스페인에서 자치경찰의 직급은 공무원규정 제225-2조 규정에 따라 4계급(순경, 경사, 경감, 경정)으로 구분하지만, 자치경찰 4계급 이외에도 Alguazils(공익요원), Serenos(야경단), 자치경찰 보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③ 벨기에

- 벨기에는 연방경찰과 지방경찰 인력이 2005년 기준으로 약 39,000명 정도이며 이중에서 35,500명 이상이 경찰관 직군이고 나머지 약 3,500명은 행정지원 및 물류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일반공무원(collaborateurs civils)임
- 2001년 9월 지방경찰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전인력, 행정인력, 지원인력 결정에 대해 왕령으로 결정하였음
- 이에 각 지방경찰의 인력구성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찰보조 인력이 작전인력인 기초직급의 15%를 넘지 말아야 하며, 중간관리직급의 수는 기초직급과 비교하여 25%~33% 수준이며, 장교직급은 중간관리직급의 25%~33% 수준이 되어야 함

## ■ 자치경찰의 임용 및 교육훈련

### ① 프랑스

- 프랑스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의 한 직군이기에 때문에 지방공무원 채용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방공무원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자치경찰직 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함
  - 현재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하나 이상의 지방정부가 상호협력으로 공동 운영할 수 있는 자치경찰 설치가 가능함
- 자치경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적으로 16세 이상이면 가능하나, 정규직의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18세가 되어야 함
- 자치경찰의 C직급 순경 채용시험의 경우 먼저 주관식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1차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는 2차 면접과 체력시험을 거쳐야 함
  - 체력시험은 1,000m 달리기, 높이뛰기, 높이뛰기, 6kg 투포환 던지기, 50m 수영 등에 대해 시험을 실시함
- 자치경찰 직무교육은 각 직급에 따라서 시행되며, 통상적으로 자치경찰 임용자에 대해서 최소한 이론교육 67일, 소속 자치정부에서의 실무교육 34일, 국가경찰기관(군경찰, 소방서, 국경세관, 경찰법원, 교도소 등)에서의 현장교육 20일 등을 실시함

### ② 스페인

- 스페인 자치경찰 책임자인 자치경찰장(Jepatura)은 시장이 최고 관리자층(Escalatechnica)에서 임명하고, 일반 자치경찰관 채용은 최고 30세 미만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최하위 계급인 순경(Policia)의 일반채용과 간부계급인 경위, 경감, 경정 계급의 특별채용 등으로 이루어짐
- 간부계급 승진 대상인원의 최대 25%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을 통해 선발하며, 나머지는 내부승진을 통해 임용하며, 기타 계급의 승진은 전원 내부 승진을 통하여 이루어짐

- 스페인 자치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은 관할 자치지역정부 소속의 지방경찰학교, 시립 경찰학교의 훈련과 보수교육 등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며, 기본 교육훈련과정으로 순경 신입과정 및 간부 신입과정의 신규임용과정, 내부승진을 위한 3개월 간의 승진자 기본교육과정, 전보를 위한 교육과정이 있음

### ③ 이탈리아

- 이탈리아 자치경찰의 임용은 기초정부가 자체 자격요건 및 시의 공무원 채용방식에 따르며, 자치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인데, 자치경찰관으로 임용되면 경찰업무의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함
- 정기적인 재교육에는 연간교육과 재교육 과정이 있어 자기 방어 및 업무수행 기술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고 있음

## V. 외국의 자치경찰 지원인력 사례

### ■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의 지원인력 사례

#### ① 프랑스

- 파리는 자치경찰인력을 대신해서 국가경찰이 수도경찰로서 자치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교통업무 등 파리시 자체적으로 부분적인 자치경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500여 명 이상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 자치경찰이 제일 먼저 설치된 니스시의 경우에는 자치경찰 300여 명 이외에도 교통안전업무와 관련되어 700여 명의 보조인력들이 활동하고 있음

## ② 스페인

- 스페인 자치경찰 인력을 보면 바스크 자치지역은 7,500명, 카탈로니아 자치지역은 현재 6,200명이지만 2010년까지 앞으로 1,400명의 증가를 예정하고 있으며, 갈리스, 안달루치아, 발란시아 지역은 국가경찰이 자치정부의 지역경찰 임무를 수행하는데 약 600명 정도 도입
- 정규직 자치경찰 인력 이외에 자치경찰이 없는 시는 자치경찰 권한을 소지하고 재산과 시설을 보호하는 요원, 즉 경비원(Guarda), 감시원(Vigilante), 경비요원(Agente) 등과 같은 보조인력을 해당 시의회가 결정하여 인력지원을 하고 있음

## ■ 지방경찰제 시행 국가의 지원인력 사례

### ① 벨기에

- 벨기에는 자치경찰이 혼합된 지방경찰제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경찰활동을 위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보조경찰이 있고,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은 이와 같은 임무수행을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지역의 소방관, 응급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등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방경찰제의 정규경찰과 별도로 보조직급(Cadre auxiliaire)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보조직급은 학위조건이 없으며, 경찰관할지역에서 공석이 게시되면 응시할 수 있는 직급으로 응시시험에 합격하고 3가지 기초교육을 받게 되면 지방경찰 보조요원(Agent auxiliaire)이 될 수 있음
- 보조직급은 제한된 경찰권을 갖게 되므로 주로 교통사고 보고, 주차감독 등의 임무와 기타 지방경찰로써 수행해야 하는 법규준수에 대한 감시활동을 주로 수행함으로써 경찰을 지원함

- 3년 이상의 보조직급 경험자는 정식 경찰이 되는 기초직급의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합격자에 대해서는 정식 경찰관(inspecteurs de police)으로 진급함

## ② 영국

- 영국의 경찰조직은 2004년 현재 경찰공무원 30,265명, 행정직 공무원 12,500명, 교통보조원(traffic wardens) 500명, 경찰보조원(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s) 1,430명 등이 있음
- 런던대도시의 경우 경찰보조(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s)인력이 있는데 이들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경찰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경찰관의 눈과 귀가 되는 역할을 수행함
- 경찰서에 배치되어 소매치기, 주류판매 감독, 사회비행 감시 등 순찰을 통한 경찰 보조업무를 수행함
- 경찰보조 인력 중 특히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자치구의 경우, 주민 수는 18만명 정도이지만 런던의 정치 중심지라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최대 217명의 경찰보조 인력을 배치하였음
- 영국의 경찰보조의 임무에 대해서는 2002년 경찰개혁법(Police Reform Act)의 부칙 제4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정규직 경찰관과 경찰보조원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 9>과 같음

〈표 9〉 런던 대도시 경찰관과 경찰보조원과의 차이점

런던 대도시 경찰관	런던 대도시 경찰보조원
경찰권 행사, 경찰관의 법적 의무 집행	-런던대도시 경찰청의 일반민간직 -제한적 권한 행사
-체포권, 도보 및 차량 순찰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정지, 탐문 등의 권한 행사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경찰력 집행의무	-도보순찰 -경찰관 지원 -특별한 상황에서 저지권 사용 가능 -잃어버린 물건과 차량에 대한 수색권 -사람에 대한 수색권은 없음 -관여의무가 없기 때문에 경찰관과 달리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부터 철수
방탄조끼 착용, 수갑, 곤봉, 가스총	방탄복 착용
-정보수집 및 관련된 행동 집행력 -초기범죄 보고 및 범죄수사 집행 -런던대도시 전체 범위를 대상으로 경찰력 집행	-정보수집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및 증인 역할 -범죄 수사권과 보고권은 없음 -런던대도시의 일정한 자치구 지역에 한정
-헨드 경찰학교에서 18주 교육 -24개월의 경찰후보생 복무	-런던 자치구의 교육절차에 따라 3주 교육 -12개월의 수습기간
경찰보조원 관리, 감독, 지휘	-경찰관으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음 -특별한 역할수행을 위한 특정기술이 요구되면 기술교육 실시

- 특별자원봉사경찰(Special constables)이 있는데 이들은 자원봉사로 지역경찰관 보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훈련을 받으며, 경찰복장을 하고 경찰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주민공동체는 자신들이 지킨다는 전통적인 정신을 이어받아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영국시민으로 18세 6개월 이상부터 50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의 특별자원경찰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경찰업무를 지원함
- 이들을 근린 특별자원경찰관(Neighbourhood Special Constables)이라고 하며, 농촌지역에서는 마을경찰관(Parish Constables)이라고도 함
- 이들의 임무는 교통경찰업무, 도보순찰업무, 자동차순찰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고, 주민방범단(Neighbourhood Watch, Home Watch)은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5백 만 이상의 가정을 지키는 마을방범단으로 활약하고 있음

## VI. 개선 방안

### ■ 자치경찰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 자치경찰의 존재는 주민생활에서 항상 경찰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목적 이기 때문에 파출소가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대화, 의견교환, 주민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필요시 범규내용을 상기시켜 주민이 범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주로 수행함
- 유럽 선진국의 경우 국가 전체에 있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되어 있어 법적·제도적으로 이원적 경찰조직을 운영하면서도 공동협력체제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음
- 이들 국가의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의 한 직군으로 교육훈련, 퇴직제도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원칙과 법제도의 적용을 받음

### ■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활용

-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3국은 정규직 지방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치경찰 이외에도 자치경찰 보조인력인 후보직급 또는 보조직급을 설치해 두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 자치경찰이 없는 시는 경비원(Guarda), 감시원(Vigilante), 경비요원(Agente) 등이 자치경찰 권한을 대행하며, 시의 재산과 시설을 보호하고, 프랑스도 자치경찰 후보직급(Stagiaire)을 두고 자치경찰의 보조기능직의 공익요원(파리시)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이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례국가가 영국임

● 정규직 틀 내에서 계약직의 보조인력 활용(안)

-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자치경찰 보조요원을 확보함으로써 인력의 보충, 자치경찰 인적자원의 확보, 경험 축적, 자연스러운 업무연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경찰보조 인력은 자치경찰관은 아니지만 자치경찰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자치경찰관의 눈과 귀가 되는 보조자로서 청원경찰 및 동네방범대원 등과 구별되는 인력임
- 보조인력의 운영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며, 각 거주지 구역의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남녀 구별없이 인력충원을 하여 각 거주동네 주변에 배치·활용하고, 교통정리 등 도로교통과 순찰활동을 겸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과 도보 순찰 등에 동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매치기, 주류판매 감독, 사회비행 감시 등 순찰을 통한 경찰 보조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직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충원 가능한 자치경찰인력(안)

-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인사교류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하지만, 특정직 지방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가경찰과 달리 계급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연령정년을 유지하고 있음
- 즉, 자치경찰감 이하는 57세 정년, 자치경찰정 이상은 60세가 정년임
- 또한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국가경찰과 인사교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직급에 대해서도 국가경찰로부터 자치경찰로의 인사교류 등이 가능함
- 이러한 인사체계를 고려해 볼 때, 계급정년과 관련하여 전직을 희망하는 군장교출신에 대한 재충원 기회를 확대하는 인력활용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전직을 희망하는 군장교들의 경우 연간 약 천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이미 국방 분야에서 상당한 방첩, 치안활동에 관한 지식을 겸비한 고급 인력임
- 군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잠재적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직특별임용제도 등을 활용하여 일부 임용자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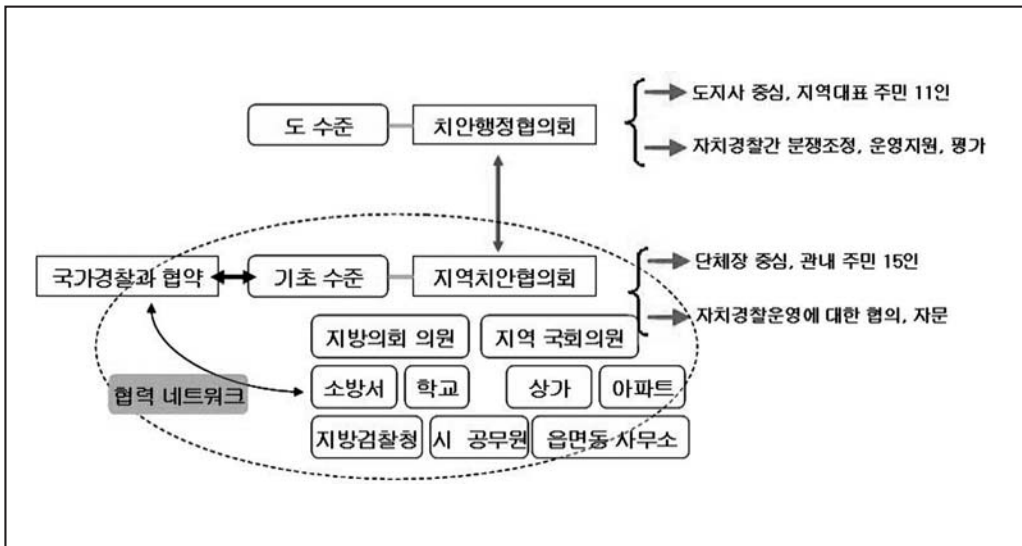


## ■ 지역치안 협의회 중심으로 시민봉사단체와 네트워크 활용

### ● 시장이 주재하는 「지역치안협의회」

-시장을 중심으로 관할지역 내에 근무하는 교육부 대표자(초·중·고등학교 교장,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국가경찰, 소방공무원, 자치경찰법안에서 지정한 자격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하면서 아파트 단지, 상가지역, 학교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봉사활동을 체계화 하도록 유도하여 자치경찰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범죄예방과 교통안전 등의 문제해결을 하도록 함

〈그림 4〉 자치경찰 중심의 협력네트워크 운영



-지역주민들은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서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경찰 활동으로부터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달하고, 자치경찰은 이와 관련한 주민과의 협력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매주 시장과 자치경찰, 국가경찰간 치안협력회의 개최를 통해서 관내 자치경찰 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중점업무에 대한 브리핑, 장비사용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협력요청을 받아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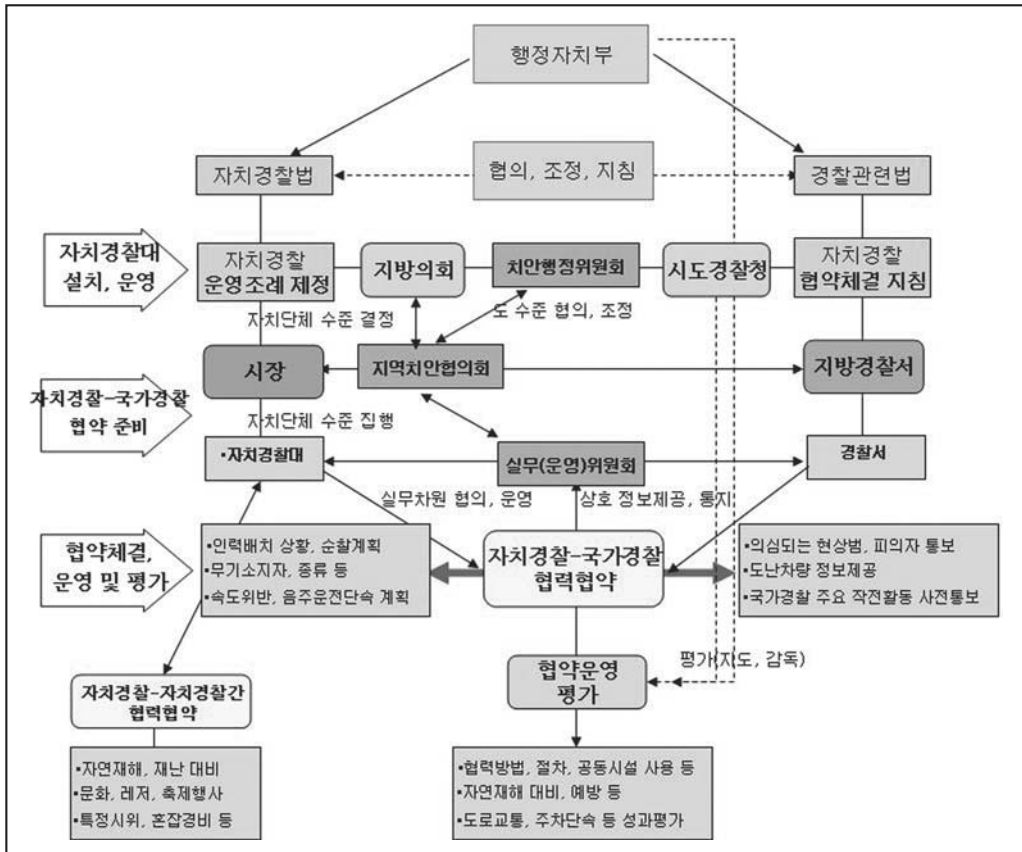
—동시에 지방의회와 지역치안협의회는 반기 또는 분기별로 자치경찰 활동을 분석한 보고서를 시장(자치경찰대상)으로부터 보고 받아서 이를 각 유관기관 대표자들에게 보고하고,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주역주민들에게 자료공개 및 팸플릿 등으로 보고하여 자치경찰의 활동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협조체제 활용

###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업무협약제 운영

—보다 확고한 제도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상호협력적 (경찰)업무의 명시적 규정, 자치경찰의 업무 제한범위 및 활동시간,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계약으로 체결한 협력협약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5〉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협력협약 절차 및 운영도



- 자치경찰의 보조인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현재의 방법순찰대 등 지역사회의 봉사 단체들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음
- 그러나 영국 등 유럽국가의 경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협조체제의 한 구성요소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거버넌스체제의 유용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시스템이 가능할 것임
- 이상 제기된 문제점에 관해서 외국사례를 살펴보았으나 아직 체계화 되지 못한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경찰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내용문의 : 안영훈 수석연구원(02-3488-7314, ahn@krila.re.kr)





# 「자료 회원」안내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법률 제3809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당 연구원은 설립이래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각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기관 및 인사에게 보급하여 왔습니다. 당 연구원은 유익한 자료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자료회원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1. 자료회원 가입방법

당 연구원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우송하거나 팩스(02-3488-7370)로 전송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자료회원 가입안내)에서 양식을 Down 받아 작성하시고 메일(leeyong@krila.re.kr)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직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연중 수시로 하실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입금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기존 회원은 회비 만 납부)

## 2. 회원구분, 회비, 자료구독내용, 회비납부방법

회원구분		회비	자료구독내용	회비납부방법
일반회원	개인회원	30,000원	지방행정연구, KRILA FOCUS, 세미나·공청회 초청장 등	○ 지로납부: 지로용지발송(지로 번호 7630619)  ○ 은행송금: 국민은행 367-01-0044-581 (예금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관회원	50,000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100,000원	지방행정연구,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집, KRILA FOCUS, 세미나·공청회 초청장 등	
	기관회원	150,000원		

## 3. 제 출 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혁신기획실 조성사업팀

(137-873)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13

T. 02-3488-7363 / F. 02-3488-7370 / E. leeyong@krila.re.kr



<http://www.krila.re.kr>

## 「지방행정연구」원고 모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관련 전문학술지인 「지방행정연구」에 게재 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지방행정연구」는 1986년 7월에 제1호 발간을 시작하여 그 동안 자치행정, 지방재정·세제, 지역정책분야의 주제에 대한 수준 있는 연구논문들을 게재하여 지방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관련 분야의 활발한 지식교류를 위한 매체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논문심사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1. 연구지 모집분야 : 자치행정, 지방재정·세제, 지역정책·균형발전

2. 연구지 발간일정 : 연 4회 발간

— 2008년 3월호(통권 제72호), 2008년 6월호(통권 제73호)

— 2008년 9월호(통권 제74호), 2008년 12월호(통권 제75호)

3. 논문 접수일정 : 연중 수시접수

4. 논문 제출 방식 : E-mail로 제출 (local@krila.re.kr)

5. 논문 작성 방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의

「지방행정연구지 기고안내」 참조

6. 제 출 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혁신기획실 조성사업팀

(137-873)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13

T. 02-3488-7361 / F. 02-3488-7370 / E. local@krila.re.kr



<http://www.krila.re.kr>

